

# 언론 자유 관점에서 본 취재윤리

이 승 선

목원대 광고홍보학과 교수

- 연세대 신문방송학과 졸. 동 대학원 석·박사
- 충남대 특허법무대학원 석사
- 한국언론법학회 연구이사
- 저서 및 논문 :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책임 연구」, 「발표권 행사에 있어서 전략적 회피와 역이용의 문제점」, 「표현의 자유에 대한 사전적 제법의 문제점 고찰: 방영금지 가치분 결정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외 다수.

## 1. 취재윤리의 근거지로서 진실보도

타인과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것,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상적인 사회적 덕목으로 추앙받아왔다. 다양한 유형의, 가능한 많은 사람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것은 성공적인 업무 수행의 밑거름으로 간주된다. 인적 사슬 망을 견고하고 촘촘히 엮기 위해서는 상대방에 대한 충정어린 배려와 세심한 관리체계가 뒤따라야 한다. 투자와 성공의 전형적인 모델이라 할 만한 이 모델은 언제, 어디서나 지고지순한 것으로 통용되는가? 아니다.

고전적인 자유주의 언론관에 의하면 언론인은 오히려 거래 상대방과 적대적인, 긴장관계를 유지할 것을 요구받는다. 직무를 완수해야 하는 직장인의 한 사람으로서 터무니없고 가혹한 주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호적이며 상호 밀착한 협력 관계 대신, 언론인은 상대방과 긴장 대립하고 상호 견제하는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를 저널리즘의 이상과 원칙이

라고 역설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단순, 거칠게 대답하자면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서다.

사회 일반인들에게는 모범적인 관계의 법칙으로 통용되는 것들이 언론인들에게는 오히려 경계의 대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긴밀하고 끈끈한 취재원 관계가 언론의 진실추구에 걸림돌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언론이 추구해야 할 가장 고귀한 가치인 '진실'을 획득하고 이를 국민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유착해서는 안 되고 일정한 긴장관계 혹은 적대적 긴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접촉이 잦은 취재원은 물론 유형이든 무형이든 언론의 취재나 취재·보도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할 것도 요구된다. 진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든 자본이든 경영·소유주든, 그 모든 것과 경계를 분명히 하여 독립할 것과 상호접촉이 불가피한 취재원 관계에 있어서도 적대적 긴장, 아니면, 최소한 불가근 불가원(不可近 不可遠)을 지상과제로 한다. 너무 가까울 경우 진실을 가려서 보는 눈이 흐

저널리즘의 생명인 진실추구를 위해 취재원과  
저널리스트 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를  
방치하지 말고 언론윤리적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공론화 해야

러지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 정보 접근의 기회 자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사건기사에 대한 취재 실상을 밝히면서 한 현직 언론인은 기자가 취재원과 유착돼 알고자 하는 것을 알아내지 않고 덮어둔다든지 사실 확인을 게을리 한다면 그 언론사는 그 순간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단정짓는다(이광범 외, 61). 2005년 봄 한국언론재단이 전국 언론인 1,03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식조사에서 언론인들은 취재 보도의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사실을 정확하게 취재' 하는 것을 꼽았다(오수정, 2005). 한국의 신문윤리강령 제4조 '보도와 평론'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하고 또한 진실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바르게 평론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가? 악법중의 악법으로 평가를 받았던 1980년 제정 『언론기본법』도 진실보도를 기치로 내걸었다. 언론기본법 제9조는 언론이 공표 전에 모든 공표사항의 진실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정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 제4조는 언론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4조 등에서 진실하지 않은 보도에 대하여는 '정정보도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정하고 있다. 『방송법』도 제6조에서 방송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 등의 자유와 보장에 관한 법률』, 일명 『신문법』 제5조도 정기간행물에 의한 보도가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성별·연령·직업·신념·계층·지역·인종 등을 이유로 편집에 있어 불합리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법은 제3조에서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규정하

면서 누구든지 동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규제나 간섭을 할 수 없으며 언론사업자는 동법에 따라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임의적인 기구이긴 하지만 동법은 제18조에서 편집의 자율성·독립성·공정성 등을 보장하기 위한 편집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도 언론의 자유가 현대 자유민주주의의 존립과 발전에 필수불가결한 기본권이며 이를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 기본원리의 하나라고 보면서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는 어디까지나 언론·출판자유 내재적 본질적 표현의 방법과 내용을 보장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그것의 객관화 수단으로서 객체적 시설이나 언론기업의 주체인 기업인으로서의 활동까지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sup>1)</sup>

헌재결정이나 관련법의 취지는 언론의 취재·보도 자유와 편집권 독립이 진실하고 공정·객관적인 언론활동의 밑거름이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이에 근거해 유지·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고 있다. 김옥조는 저널리즘의 생명인 진실추구에 있고 진실을 공중에 알려야 하는 저널리스트는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누구로부터도 독립적이라면 어떤 사람과의 이해관계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하는데 이는 사법제도에서 법관의 제척·기피·회피제도가 사사로운 이해로부터 사법정의를 옹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것과 한가지라는 것이다. 그는 따라서, 언론보도가 사례에 따라서는 재판보다 더 큰 국가적·사회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으므로 비록 취재원과 매스미디어·기자들 간의 사사로운 이해관계도 그대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언론 윤리적 차원

1) 헌법재판소 1992.6.26. 90헌가23 결정

에서 철저히 점검되고 공론화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김옥조, 2004: 115).

21세기에 출판된 언론인의 저술은 진실보도의 지난함을 담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다.

“고발뉴스를 만들 때 제1요건은 거짓말이다. 거짓말 없이는 도대체 취재가 안 된다. 거짓말을 하지 않고서는 취재할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 고발뉴스는 위장촬영이 없으면 뉴스 제작이 거의 불가능하다. 위장해서 몰래 접근해 진실을 카메라에 담을 수밖에 없다. 몰래 촬영, 위장 촬영이란 진실추구가 목적인 셈이다. 진실이 담긴 현장을 시청자에게 전달해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것 위장 촬영의 목표이자 당위다 / 현장을 치고 들어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인터뷰를 받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럴 때는 신분을 공개한 뒤 들어간다. 아니면 몰래 카메라를 들고 취재여부를 숨긴 뒤 신분을 감추고 손님이나 시민의 것으로 가장해 현장의 모습을 그대로 쓴다. 생생한 현장을 전달해 주는 현장성이 인터뷰의 생명이다 / 내용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인터뷰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약간 상기된 표정에 높은 톤의 인터뷰를 받도록 유도한다. 그러려면 어느 정도 갈등을 만들어 내는 것도 유용하다. 집요하게 기자가 물어 볼 때 취재 대상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낼 수 있다. 이런 인터뷰의 효과가 크다 / 몰래 카메라나 인터뷰는 대부분의 경우 현실법상 불법이다. 그러나 법을 지키다보면 제대로 촬영이나 취재를 할 수 없다. 고발 뉴스 자체가 성립되지 않을 수 있다. 취재방법이 불법인 줄 알지만 어쩔 수 없이 뉴스를 제작한다”

진실추구에 보탬이 될 경우, 취재과정에서 위법적인 행위를 범하더라도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라면 비윤

리적인 취재행위를 용인해 줄 수 있는가? 비윤리적으로 취재하고 획득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정보가 진실하고 공공성이 있을 경우, 해당 언론과 언론인에 대해서 윤리적 면죄부를 줄 수 있는가? 복잡하고 미묘하긴 하지만 거칠게 대답하자면 ‘아니다’이다.

2005년 겨울 초입, 황우석 교수의 ‘연구윤리’ 문제를 제기했던 MBC ‘PD수첩’이 스스로 ‘취재윤리’ 문제로 광폭한 비난과 공격의 표적이 되었고, 저격의 방아쇠를 당겼던 YTN이 결국 ‘취재·보도의 윤리적 결함’을 이유로 사과하는, 희극 같은 비극이 연출되었다. MBC는 2005년 12월 4일, ‘PD수첩’의 취재과정에서 제작진이 취재원을 상대로 ‘검찰수사’를 언급하며 강압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언행을 하는 등 취재윤리를 현저히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다면서 국민에게 사과하였다. 이어서 12월 7일, 임원회의에서는 15년 동안 660회를 방송해 온 방송사의 대표적 프로그램 ‘PD수첩’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다. 12월 16일 MBC는 인사위원회를 열어 관련 제작진에게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결정하였다.<sup>2)</sup> MBC ‘PD수첩’ 제작진의 취재윤리 문제를 제기했던 YTN도 자신의 취재과정이 일부 부적절했다면서 사과방송을 내보냈고 취재윤리와 관련, 보도국장은 보직을 사퇴하였다. 우여곡절 끝에 회생하긴 했지만 ‘PD수첩’ 사건을 통해 우리는 ‘취재과정의 윤리’가 보도내용의 공익성과 진실성에 버금가는, 경우에 따라서는 으뜸의 규범이 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일례로 황우석 교수 사건이 정점에 달해 있던 2005년 12월 7일부터 12일까지, 전국의 10대 이상 성인남녀 3,6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터넷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70.8%가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윤리를 지켜야 밝혀진 진실이 빛을 발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사회적 강자의

2) 2005년 12월 15일 밤, 긴급 편성된 ‘PD수첩 특집’ 편은 평소보다 2배 가량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PD수첩’은 2006년 2월 한국방송프로듀서상의 시사 다큐멘터리 부문 작품상을 수상하였다.

왜곡된 언론윤리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은 물론 언론 고유의 사명과 역할까지  
위협할 수 있어

불법을 취재하기 위해서는 때로 불법적 혹은 비윤리적인 취재가 용인될 수 있다는 응답 비율은 20.5%였다.<sup>3)</sup>

그동안 한국 언론은 별로 흠잡을 데 없이 온전한 명문의 ‘윤리강령’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취재과정의 윤리적 ‘실천’은 시답잖고 가물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제 언론인들의 비윤리적인 취재행위, 혹은 부적절한 취재원 관계가 오프라인 언론이나 인터넷을 통해 타의에 의해 폭로되기도 하고, 언론인들이 저술한 자서전 격의 책자에 비윤리적·위법적인 취재 경험들이 용맹무쌍한 전사의 무용담처럼 버젓이 소개되고 있다. 일반 대중은 물론 장차 진실추구의 선봉에 설 것을 꿈꾸는 예비 언론인들에게 자칫 뒤틀린 언론인의 모습과 왜곡된 언론윤리를 이식해 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언론과 언론인에 대한 불신을 가져오고 언론에 대한 일반인들의 외면은 끊임 없이 실제적 진실을 추구하고 사회 환경을 파수해야 할 언론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악수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심히 심각한 가상의 시나리오다. 그러나 결코 탈현실의 시나리오가 아니다. 황우석 교수 사건에 대한 언론의 취재윤리 파동이 이를 증거해 주고 있지 않은가?

## 2. 취재의 자유와 법적 제한

헌법 제21조가 보장하고 있는 표현자유는 중요한 영역으로서 언론의 자유에는 취재·편집·보도·발행·배포 등의 활동이 망라된다. 언론기관의 보도는

민주주의 사회의 국민 국정관여와 관련 중요한 판단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기 위한 것인바, 취재행위의 자유는 표현행위의 필수적 전제이므로 우리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즉 보도의 자유에 포함된다(김철수, 2005: 719-720). 즉, 취재는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이기 때문에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바람직한 보도가 이루어질 수 없고, 더욱이 표현의 자유를 정보유통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한 보호로 이해하는 한 정보수집, 취재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보호는 당연한 논리적 귀결이라고 할 것이다(김옥조, 2005: 257). 따라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고 ‘주는 뉴스’만을 편집·보도하는 경우, 그것은 이미 언론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아웃풋(output)의 창구에 지나지 않는다(허영, 2005: 549).

결국, 국민 권력의 대리 수행자인 정부를 감시·견제하는 한편, 국민들이 알아야 하고 알고 싶어 하는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즉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언론에게는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취재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자기 정당화와 정책 홍보를 목적으로 정부가 언론을 통해 알리고 싶어 하는 정보의 단순 전달자로서가 아니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은폐하거나 알리고 싶어 하지 않는 정보를 찾아내 알권리의 갈증을 해소시켜 줄 책무가 언론에 있고,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한 전치조건으로서 취재의 자유가 요구된다. 정치권력 뿐만 아니라 감춰진 사회 구석구석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고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도 언론의 취재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 나라 사정에 따라 다소

3) 경향신문, 2005.12.14. 45판 30면.

차이가 있긴 하지만 취재원 비닉권 혹은 취재원 보호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까닭은 권력기관 내부에서 은밀히 자행되는 부정과 부패는 이들의 공식적인 보도 자료를 통해 알려지지 않고 주로 내부 고발자의 정보 제공에 의존하게 된다는 데 있다. 내부 정보 제공자인 취재원을 보호하지 않았을 경우 취재원은 실정법 위반이나 규약 위반의 책임을 지고 사법처리 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겪어야 한다. 취재원 보호를 취재 자유의 보장과 관련해 논의하고 있는 이유이다.<sup>4)</sup>

물론 취재의 자유가 무제한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허영에 따르면 취재활동도 다른 공공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컨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취재활동, 중대한 국익을 해치는 취재활동, 형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방법으로 취재하는 행위 등이 허용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허영, 549). 미국에서는 유통기간이 지난 생선과 육류를 세제로 닦아내고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현장을 방송한 방송사의 행위에 대해 상징적 수준이긴 하지만 1달러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여되었다. 두 명의 방송사 피디가 경력을 속이고 위장 취업해 사건 현장을 몰래 카메라로 촬영해서 보도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연방 1심법원은 사기와 배임, 무단침입에 대한 책임을 물어 5백 50만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판결하기도 하였다. 잘 알려진 Food Lion 식품회사와 ABC의 PrimeTime Live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검사나 수사관으로 신분을 위장해 정보를 획득한 피디와 기자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거나 선고를 유예하였고 사적 영역에 대한 무단침입

을 이유로 형사상 300만 원의 벌금, 민사상 1천만 원의 손해배상이 인용되기도 하였다. 허락 없이 문서를 절취해 간 기자의 행위에 대해 절도죄가 적용되었고, 도청자료를 획득 보도한 방송기자를 현행법상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의 죄로 처벌하였다. 물론 이들 사건에서 보도내용의 공익성이나 진실성이 부정된 것은 아니다. 보도로 인하여 오히려 공적인 쟁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커지고 사회적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잡히기도 하였다. 취재행위의 위법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서는 진실성과 공공성을 이유로 위법성을 조각하고 있는 법 현실을 보여준다.

### 3. 취재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개인의 법익, 사회적 법익 그리고 국가적 법익을 이유로 취재행위를 제한할 때, 그러한 법적 제한에 대한 언론의 저항은 윤리적 측면에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쉽게 대답하기 힘든 질문이다. 2005년 7월,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 기자가 리크게이트 관련 취재원을 증언하지 않고 구속 수감되었을 때 그녀는 '언론자유'의 상징'으로 여겨졌었다. 미국 언론인 중에서 가장 긴 85일간 수감됐던 밀러 기자는 법적 제한에 저항함으로써 언론의 윤리원칙을 준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면, 밀러 기자와 함께 기소되었던 '타임'의 매슈 쿠퍼 기자는 판결 직전 법정에서 진술하겠다고 밝혀 구속을 면했으나 취재원을 공개한 것은 '올바른 결정'이 아니라는 비난을 겪어야 했다. 법적인 증언 요구를 수용함으로써 취재원을 보호해야 할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적 책무를 위반했

4) 취재의 자유에는 취재원 목비권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취재원을 밝히지 아니할 권리는 신문의 진실보도·사실보도 및 공정정보도를 위한 불가결한 전제조건이기 때문이다. 취재원 목비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취재원의 봉쇄효과를 가져오게 되어 신문이 진실보도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게 된다(허영, 2005: 549).

취재윤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이  
사상될 수 있어

다는 혹독한 비판이었다. 실정법의 요구와 언론윤리 원칙간의 갈등이 빚어졌을 때 언론의 취재보도 준칙을 준수하기 위해 실정법에 저항하는 것이 언론의 윤리적 정당화를 도모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다른 차원에서 윤리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취재원 보호가 자칫 취재원과 언론인간의 밀월관계를 조성하고 언론 및 언론의 수용자가 취재원의 농간과 조작에 조롱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리크게이트란 2003년 6월 부시 행정부의 이라크 침공을 비판했던 조지프 윌슨 전 대사의 부인 발레리 플레임이 중앙정보국(CIA)의 비밀요원이란 사실을 백악관 고위관리들이 고의로 언론에 흘린 사건이다. 밀러 기사는 법정 증언을 조건으로 석방돼 자신의 취재원이 루이스 리비 전 부통령실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밝혔다. 위증 등의 혐의로 기소된 리비는 딕 체니 부통령의 허락 하에 비밀 정보를 언론에 유출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윌슨 전 대사의 신뢰성에 흠집을 내기 위해 그의 아내가 CIA 비밀요원이라는 비밀정보를 기자들에게 흘리도록 체니 부통령이 부추겼고 취재원 보호라는 장막 속에서 밀러 기사는 감시견이 아닌, 취재원의 충직한 주구 노릇을 했다는 것이 밀러 기자에 새로운 평가의 골격이다. 2002년 국제테러리즘 기사로 풀리처상을 받기도 한 백전노장의 여기자 주디스 밀러는 결국, 취재원을 보호한 언론자유 의 영웅에서 부적절한 취재원 관계를 유지한 '비윤리적 네오콘'이었을 뿐이라는 윤리적 비난 속에 뉴욕타임즈를 사직, 불명예 퇴진하게 되었다. 취재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인 저항에도 불구하고 취재원과의 긴장관계, 취재원과의 불가근 불가원의 윤리적 원칙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언론인에 대한 신뢰성을 얼마나

위협하는지 밀러 기자 사례가 웅변해 주고 있다.

진실은 언론이 추구하는 제1의 가치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언론이 보도한 내용이 진실이고 보도의 파급 효과가 바람직하다고 해서, 혹은 한마디로 결과가 좋았다고 해서 모든 취재과정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다. 언론인들의 직업적 윤리강령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일반 수용자들도 내용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비윤리성으로 인해 그 의미가 사상될 수 있으며, 취재윤리의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언론보도의 진실성과 공익성은 포기할 수 있다고까지 생각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감추어진 부정과 부패를 들춰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상황에 따라 윤리강령의 주문을 빗겨갈 수밖에 없을 때조차, 취재인에게 취재과정의 윤리적 원칙만을 고수하라고 다그치기에는 언론이 수행해야 할 사명이 너무 크다. 취재윤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취재윤리는 왜 중요한가?

언론의 보도활동은 기획·취재·기사작성·보도라는 일련의 과정으로 구성된다. 취재윤리는 언론인이 취재단계에서 제3자와 유무형의 관계를 풀어감에 있어서 적용하는 가치판단 체계이자 행위규범이다. 언론인들은 매일매일 그날의 미디어 활동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특정한 선택을 하게 되고, 언론의 취재윤리는 이러한 언론인들의 선택이 일련의 가치와 원칙에 입각해 이뤄지도록 연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가치선택은 항상 옳은 선택과 잘못된 선택, 옳고 그름의 정도와 관련을 맺고 있다. 여러 가지 선택지들이 산재하지만 절대적인 원칙은 없는 저널리즘 분야에서 언론인들은 윤리적인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구분하는 독자적인 선택을 해 왔다(Dennis and Merrill, 1991: 150-151). 취재윤리는 언론

인들이 직면한 가치 판단과 선택의 준거를 제공한다. 앞서 국내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취재윤리는 법적인 물리적 강제뿐만 아니라 대중의 신뢰 상실이라는 무형의 압력으로부터 언론의 존재가치를 확인케 하는 가장 견고한 보호벽이라고 할 것이다. 취재윤리가 강조되는 까닭은 어디에 있는가?

첫째, 언론이 추구하는 진실보도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이다. 모든 직업은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있다. 법률가는 정의의 구현을, 의사는 환자에게 도움을 주는 의무를 이상으로 내세우는데 언론인에게 있어서 최고의 이상은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다(Patterson and Wilkins, 1998: 20). 핑크는 진실을 밝히는 것은 언론활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 거짓을 말하고 날조하며 진실을 은폐하는 행위는 모든 언론에서 용납할 수 없는 최악이라고 본다(핑크, 1995: 49). 코바치 등의 견해도 같다. 지난 300년간 뉴스 전문가들이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원칙과 불문율을 발전시켜 왔는데 그 중 첫 번째가 바로 '저널리즘의 첫째 의무는 진실추구'라는 것이다. 비록 진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저널리즘 특유의 진실 개념에 대하여 정확성, 공정성, 균형성 등이 대체 개념 혹은 유사 개념으로 제시되고 있기도 하다. 개념 정립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사회는 언론이 진실을 추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언론인들 역시 자신은 언론 자유나 상업이 아니라 진실추구에 종사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코바치 외, 2003: 53-72). 언론이 민주사회에서 막중한 기능을 수행하고 큰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언론은 진실할 것'이라는 공중의 신뢰와 기대가 전제되어 있기 때문이다. 언론은 국민의 알권리에 봉사하는 것에 존재의의를 두고 있는데 만약 언론이 거짓으로 가득 차 있다면 국민의 알권리에 역행하게 되므로 바로 그 순간 언론은 제 명을 다하게 된다. 따라서 언론에 있어서 진실이라는 것은 저널리즘 바로 그 자체이다(김옥조, 2004: 197).<sup>5)</sup> 거의 모든 언론윤리 교과서나 논문 그리고 윤리강령에 적시된 것은 언론의 존재 이유가 진실보도에 있으므로 진실을 왜곡하거나 허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 여론을 조작하려는 취재원을 꿰뚫어보지 못하거나 취재원의 계략에 부창부수한 언론은 언론이기를 포기한,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언론의 목숨과도 같은 진실이 자칫 획득과정의 윤리위반 문제로 대중들에게 전달되지도 못하고 송두리째 사라져버릴 수 있다. 설령 우여곡절 끝에 진실이 보도되었다고 하더라도 취재과정의 윤리를 더 가치 있게 평가하는 대중들에 의해 그 진실이 홀대를 받고 외면당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취재윤리는 진실을 대중들에게 온전하게 전달하는 컨베이어 벨트이자 진실에 대한 유무형의 압력과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진실을 보호할 수 있는 방탄조끼인 셈이다.

둘째, 법적 강제를 최소화하고 갈등하는 타 법익과 조화를 도모하기 위해서이다. 법은 도덕의 최대한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도덕은 요청하고 그 이후에는

5) 코바치 등은 언론인들이 여러 해에 걸쳐 진실을 대체할만한 것을 제시해 왔고, 가장 공통되는 두 가지는 공정성과 균형성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엄밀히 따져보면 이 두 가지는 모두 부적절한데 공정성은 너무 추상적이고 결국은 진실보다 주관적이다. 또 균형성 또한 너무 주관적인데 사실은 양쪽이 똑같은 비중을 지니지 않는데도 양쪽 모두에게 공정해짐으로써 기사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진실에 대해 공정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코바치 외, 2003: 69). 신문윤리강령이나 관련법들의 정의에 비취볼 때 진실성은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 등의 조건을 갖출 것을 요구받는다. 정확성은 명확한 근거에 의해 밀받침되는 서술을 가리키며 공정성은 단순히 사물을 보는데 있어 편견을 버리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수용자들이 사태의 전모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으로 진실을 추구해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메릴에 의하면 객관보도란 초연하고 선입감에 사로잡히지 않고 의견을 섞지 않고 스스로 관여하지 않고 편견을 배제하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을 의미한다(김옥조, 2004: 199-217).

*취재윤리준칙은 한 사회의 윤리규범과  
언론의 사명을 조화한 결과물로서 언론인이  
따라야 할 행위규범으로서의 가치 지녀*

책임을 못 지는 무력한 것이지만 법은 요청을 끝까지 강제로 관철시키는 강력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법과 도덕, 법과 윤리를 논할 때 법은 도덕과 윤리의 최소한이라고 말한다. 넓은 윤리적 요청 가운데 특별한 최소한의 것만을 법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이다(최종고, 2000: 18). 법을 도덕의 최대로 보든 아니면 최소한으로 규정하든 알맹이는 법의 강제력을 강조하는 데 있다. 자율적인 윤리 시스템이 작동하지 아니한 사회·환경에서는 법적 강제 장치가 물리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sup>6)</sup> 취재윤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빚어질 수 있다. 취재과정에서 허락 없이 취재원으로부터 서류를 가져와서는 안 된다는 윤리적 요구가 묵살될 경우 절도죄가 적용돼 형사처벌 될 수 있고 검사·수사관 등의 신분을 사칭해 취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윤리규범을 위반할 경우 형법상 공무원자격 사칭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촛지나 금품수수를 금하는 윤리실천요강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배임수재의 죄로 다루어질 수 있다. 무단으로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취재해서는 안 된다는 준칙을 위반할 경우 주거침입과 퇴거불응의 죄가, 타인의 전화를 엿듣거나 메일을 훔쳐봐서는 안 된다는 윤리강령을 지키지 않고 취재하였을 때 통신비밀침해의 죄가 적용될 수 있다. 취재윤리는 이러한 법적 제재를 방지하거나 최소화하고 타인의 법익과 언론자유간의 갈등을 조절하는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셋째, 언론의 취재윤리는 그 자체로 고결하고 숭양

해야 할 행위규범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윤리는 도덕적 행위의 원칙이나 규범의 체계를 가리키며 어떤 행위에 대한 옳고 그름, 그리고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 사회의 규범을 반영한다. 또한 윤리는 한 사회나 문화가 규범으로서 수용하고 있는 도덕적 가치들을 평가하고 이를 적용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도덕과 윤리를 구분해 보려고 한 역사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도덕과 윤리는 실질적으로 나뉘질 수 없을 정도로 수렴되었으며 실제에 있어 윤리는 인간생활의 도덕적 측면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부류이고 흔히 도덕철학으로 불리기도 하며 흔히 도덕과 윤리를 혼용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언론윤리에 있어서 특히 유용한데 그 까닭은 전문직 종사자들의 윤리적 행위는 광의에 있어서 한 사회의 도덕적 원칙들과 유리될 수 없기 때문이다(Day, 2003: 2-3). 모든 전문직종 종사자들이 윤리적으로 그릇된 행위를 범하곤 하지만, 오로지 언론인들만이 그러한 비윤리적 행위들을 대중들에게 알리는 용기 혹은 불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윤리적 결정이 잘못된 것일 경우, 대중의 반응은 매우 신속하고 치명적이다(Patterson and Wilkins, 1998: 1-2). 워싱턴포스트지 자넷 쿡 기자의 '지미의 세계', 뉴욕타임즈 블레어 기자 사건, 타임의 쿠퍼, 뉴욕타임즈의 주디스 밀러 그리고 황우석 교수 사건을 둘러싼 한국의 'PD수첩'과 YTN 사건에서 언론의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대중의 신속하고 광범위하며 또한 차가운 평가와 외면을 목도한 바 있다. 한편, 워싱턴포스트

6) '선한 사마리아인 법'의 경우가 그렇다. 사고나 공공의 위협, 혹은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주어도 자기 자신이 현저한 위험에 빠지거나 피해를 입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돕지 않는데 대해 형벌로 다스리는 국가가 적지 않다. 독일과 프랑스, 러시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들이 그러하고 일본 역시 구조의무가 있는 자는 물론 구조의무가 없는 자도 위난에 처한 자를 유기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법적 규정을 갖고 있지 않다.

나 뉴욕타임즈는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자신의 취재준칙 위반을 정중하게 사과하고 장문의 기사를 통해 보도내용의 오류를 공공연하게 바로잡으려 하였다. 취재윤리 위반으로 인한 잘못을 미봉하지 않고 진솔하게 그리고 과감하게 처분함으로써 해당 언론에 대한 대중의 비난과 불신의 확산을 차단하고자 하였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진실을 추적함으로써 사회환경을 감시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면 언론의 취재보도 행위는 그 사회의 윤리규범에 상치되지 않아야 한다. 취재윤리준칙은 그 자체로 한 사회의 윤리규범과 언론의 사명을 조화한 결과물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언론인들이 숭양해야 할 행위규범으로서 가치를 지니고 있다.

#### 4. 취재윤리의 유형과 정당화

취재윤리는 크게 두 부문으로 나뉘 논의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취재원과 관련한 윤리이고 다른 하나는 취재 방법·행위와 관련한 윤리이다. 우선 취재원 관계와 연관된 윤리는 취재원과 유착하지 않고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 취재원과 약속을 지키는 것 등이 주요한 내용을 구성한다. 불가근 불가원을 이상적인 취재원 관계의 지침으로 추종할 때 독립성 확보는 불가근의 원리를 실현함이고 약속 준수는 불가원을 지탱해주는 지팡이라고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가 천명한 대로 언론은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을 실현하기 위해 부당한 억제와 압력을 거부해야 하며 편집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어떠한 정치권력이나 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도 언론은 독립해야 하는데 두 가지 유형의 압력을 견뎌야 한다. 하나는 물

력을 동원해 접근을 제한하거나 보복의 위협을 가하는 등의 억제와 압력을 견뎌내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금전이나 향응 제공 등 취재원이 제공하는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실천요강 제15조는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금품, 향응, 무료여행초대, 취재여행의 경비, 제품 및 상품권, 고가의 기념품 등 각종 혜택들이 언론인들의 품위를 해치기 때문에 거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실은 언론이 취재원으로부터 독립을 유지함으로써 언론의 사명을 수행하는 필수적인 조건이라고 할 것이다.

김옥조는 세계에서 수백·수천만 원 대에 이르는 금품이 촌지나 떡값이라는 이름으로 통용되고 있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면서 촌지가 언론윤리에 던지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촌지로 말미암아 생기는 곡필의 우려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촌지가 언론이 다루고자 하는 진실을 왜곡하는 마취제이거나 독약이라고 평가하면서 외국의 윤리강령에 촌지에 관한 규정이 오래전에 사라지게 된 것은 현금 수수가 의미하는 강한 반(反)윤리성 내지 친(親)범죄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김옥조, 2004: 276-282). 유진 굿원에 따르면 미국에서 촌지나 향응의 윤리적인 문제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언론사들, 대형 언론사들일수록 뉴스가 있는 곳에 기자들을 보낼 때 회사에서 경비를 지불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유진 굿원, 1997: 96-97). 언론의 취재윤리를 제고함에 있어서 언론종사자 개개인의 윤리적 각성에 덧붙여 언론사의 제도적 뒷받침 그리고 윤리·법규에 대한 그 사회의 의식과 태도가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언론이 취재원의 강압이나 회유로부터 독립을 유지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물론 진실을 발견하고 전달하는 데 있다.

둘째, 취재원과 합리적인 약속을 지키는 것에는 엠바고(embargo), 오프 더 레코드(off the record), 배경설명(on background) 혹은 비실명보도, 취재원 보호

취재원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불가근(不可近)의  
원리를 실현함이고, 취재원과의 약속 준수는  
불가원(不可遠)을 지탱해주는 지팡이가 돼

등이 포함된다. 취재원과 불가근해야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원하면 정보를 얻는데 취약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신뢰기반이 붕괴되며 정보를 수혈 받을 수 없게 돼 언론 역할 수행의 장애가 될 수도 있다. 취재원 유착을 경계하면서 유효한 취재원 관계를 유지하는 이음새가 바로 취재원과 맺은 합리적인 약속을 준수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취재환경의 주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취재원들의 요구를 언론이 너무 쉽게 수용한다는 것, 즉, 엠바고와 오프 더 레코드, 배경설명·익명보도 등이 남발되고 있다는 점이다. 윤리실천요강은 말하고 있다. “기자는 취재원이나 출처를 가능한 밝혀야 하며 그러나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나 보도가치가 우선하는 경우 취재원이 요청하는 익명을 받아들일 수 있다. 또 취재원의 안전이 위태롭거나 부당하게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그 신원을 밝혀서는 안 된다. 윤리실천요강은 규정하기를 기자가 취재원의 신원이나 내용의 비보도 요청에 동의한 경우 취재원이 비윤리적 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당사자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도해서는 안 된다. 또 기자는 취재원이 요청하는 합리적인 보도보류 시한을 이유가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그러나 오프 더 레코드나 배경설명·비실명보도, 엠바고 등은 언론에 대한 수용자들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언론의 정보독점과 취재원에 의한 여론조작의 문제를 야기 시킨다. 취재원의 이러한 요구를 비합리적으로 수용할 경우 그것은 알권리에 대한 심각한 제약이 된다. 나아가 언론과 수용자간의 정보격차를 가져오고 언론을 이용해 여론을 조작하려는 취재원의 놀음에 장단을 맞추으로써 진실왜곡과 은폐의 공범이 될 수도 있다. 한편, 취재원들의 요구를 애초에

수용하지 않을 경우에 발생할 정보접근 및 획득의 원천차단 문제, 취재원들의 요구를 추후에 파기했을 때 입게 될 취재원과의 신뢰상실과 이로 인한 정보 획득 통로의 봉쇄라는 문제를 어떻게 치유할 것인가, 하는 점이 취재윤리 차원에서 제기되는 갈등이라고 할 것이다.

취재방법·행위와 관련된 윤리규범으로는 신분을 숨기거나 사칭하며 취재하는 행위, 비밀리에 잠입하거나 위장취업해서 취재하는 행위, 취재과정에서 취재원을 위협하거나 취재목적을 숨기고 취재하는 행위, 허락 없이 문서·자료·전자정보·영상물 등을 검색하거나 반출하는 행위, 비밀리에 엿듣는 도청행위와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재난이나 사고현장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거나 치료를 방해하며 취재하는 행위, 허락 없이 병원·요양소 등의 비공개지역을 출입하며 환자를 취재하는 행위, 개인의 주거 등 사생활 영역에 허락 없이 침입하거나 퇴거 요구에 불응해 취재하는 행위 등이 포함된다. 윤리실천요강 제2조 ‘취재준칙’ 편은 기자는 취재과정에서 비윤리적 또는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취재를 위해 개인을 위협하거나 괴롭혀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구체적으로 기자는 신분을 밝히고 취재해야 하며 대신 신분을 사칭하거나 위장하는 행위, 문서를 반출하는 행위, 전화도청이나 비밀촬영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행위, 사건·사고의 피해자 치료를 방해하며 취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공익을 위해 부득이 필요한 경우와 다른 수단을 통해 취재할 수 없는 때에는 이러한 금지원칙이 해제될 수 있다는 것도 규정하고 있다. 공인의 경우 취재나 보도과정의 사생활 보호 규정이 논란거리가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무엇을 근거로 하여 윤리강령이

요구하는 실천지침을 지키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인가, 아니면, 어떠한 경우에도 취재윤리의 실천요강을 준수해야 하는가, 그러한 취재과정의 판단과 선택행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을 것인가?

언론인이 취재과정에서 윤리적 판단을 내릴 때, 몇 가지 가능한 방법이 있다. 이것은 윤리적 판단 혹은 윤리적 추론이라고 말하며 이러한 추론이나 판단에 근거해 취재행위의 윤리적 정당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최종고, 2000; 김옥조, 2004; Patterson and Wilkins, 1998).

첫째, 규범주의적 윤리에 입각해 판단하는 것이다. 규범주의적 윤리는 규칙에 의거한 도덕, 의무론적 윤리, 법칙론적 도덕이라고도 불리는데 어떠한 행위가 도덕적 규칙에 부합할 경우 옳은 행위이며 그러한 규칙을 어길 경우에는 그른 행위가 된다는 윤리적 판단방법이다. 결과가 좋든 나쁘든 관계없이 어떤 보편적인 도덕적 의무나 원칙 아래서 행동하는 윤리관으로서 이 관점에서는 좋은 결과를 위한다는 이유로 과정이나 수단의 반칙이 허용되지 않는다. 기사가 기사를 캐내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경우 규범주의적 윤리관에 의하면 그 행위가 정당화 될 수 없다. 지나치게 규정과 의무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언론종사자들은 그 비현실성을 비판한다.

둘째, 공리주의적 윤리관 혹은 결과주의적 윤리관이다. 결과가 좋으면 수단이나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윤리적으로 무방하다는 이론인데 자신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질 이익을 예측하여 최대다수에게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 올 행위를 선택하는 규범이다. 많은 사람의 이익을 위해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것은 윤리적 판단이 된다. 이 이론에 의하면 탐사보도는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데 그 이유는 피해를 입는 탐사보도 당사자들이 존재하긴 하지만 그 보도로 인해 사회적으로 공동의 선이

구현되기 때문이다. 또 흠친 정부의 비밀문서를 입수해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해 보도하였을 경우, 목적을 이룬 과정에 문제가 있더라도 결과가 좋을 것으로 믿었다면 윤리적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윤리관에 입각할 경우 소수가 입게 될 피해가 경시되거나 단기적 이익만을 추구할 위험, 근시안적인 시각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셋째, 상황윤리로서 윤리적 판단을 함에 있어서 '상황'이 중요한 고려요소라는 입장이다. 즉 상황에 맞추어 적절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웃을 위한 사랑의 명령성과 상황이란 상대적 사실의 자발성이 합쳐서 이뤄진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선한 것은 사랑뿐이고 사랑만이 유일한 규범이기 때문에 사랑과 율법이 모순될 때는 율법을 버리고 사랑을 따라야 하며, 사랑과 정의는 동일하고 사랑은 감정적으로 좋아하는 것과 달리 태도의 문제이고 의지의 문제로서 수단을 정당화한다. 사랑이라고 하는 목적만 확정되면 그 목적의 실현을 위한 수단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윤리관은 법에 대한 예외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또 그 때 그 때의 상황에 따라 판단의 지침이 달라진다는 점에서 일관성의 문제, 편의적 자기 정당화의 함정을 안고 있다.

취재과정에서 취재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취재목적이 훼손되더라도 윤리강령이 원칙적으로 요구하는 행위규범들을 끝까지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 공익추구나 불가피한 경우에 원칙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는 예외 규정을 수용해 취재의 목적을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그 사회의 윤리규범, 해당 언론사의 취재준칙과 조직문화 그리고 해당 언론인의 직업윤리관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2005년 벌어진 구치핸드백 사건, 황우석 교수와 관련된 PD수첩과 YTN 취재윤리 및 시청자 사과방송 등 일련의 사건을 통해 부각된 것은 향응·접대·강압

취재정보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윤리규범에 의해 담보되는 것임을 자각해야

취재·위장취재 그리고 몰래 카메라를 사용한 취재 행위 등 기존의 관행들은 취재윤리 차원에서 치명적인 결함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프로그램이 폐지되거나 폐지될 뻔 하였고 관련 언론인들이 보직을 사퇴하거나 징계를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시청자·독자들이 언론인들에게 요구하는 취재윤리의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점과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할 경우 언론의 진실추구라는 역할 수행이 좌절되는 것은 물론, 자칫 언론의 존재가치 자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뼈저린 사실을 교훈으로 얻게 되었다. 국민의 알권리를 명분으로 정치권력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언론이 이번엔 인터넷을 비롯 촛촛히 엮인 시민사회의 감시·견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로 미뤄볼 때, 취재정보의 진실성은 취재과정의 윤리규범에 의해 담보되어야 한다는 점을 언론인들이 자각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합한 취재윤리원칙을 수용해야 할 절박한 시점이라고 본다. □

참고문헌

- 김옥조 (2004). <미디어 윤리>, 커뮤니케이션북스.  
 김철수 (2005). <헌법학개론>, 박영사.  
 유진 곳원, 우병동 역 (1997). <언론윤리의 모색>, 한나래.  
 이광범 외 (2002). <한국언론과 명예훼손소송>, 나남.  
 최종고 (2000). <법과 윤리>, 경세원.  
 코바치 외 (2003). <저널리즘의 기본요소>, 한국언론재단.  
 콘라드 핑크 (1995). <언론윤리>, 한국언론연구원.  
 허 영 (2005). <한국헌법론>, 박영사.  
 Day, Louis Alvin (2003). Ethics in Media Communications Cases and Controversies, Wadsworth/Thomson Learning.  
 Dennism Everette E. and John C. Merrill (1991). Media Debates: Issues in Mass Communication, New York : Longman.  
 Patterson, Philip and Lee Wilkins (1998). Media Ethics: Issues & Cases, New York : McGraw-Hill Companies.